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9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신설함 (안 제1조의2).
- 나.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함 (안 제1조의3).
- 다. 구청장은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 라.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노상·노외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 1).
- 마.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 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경형자동차에 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함 (안 별표 1의 비고 제 8호).
-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의 설날 연휴기간 및 제

9호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 (안 별표 1의 비고 제16호).

Ⅲ. 검토의견

1. 조례 정비 배경

○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저공해차량 요금 감면, 노상주차장관리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각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

(1) 안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의 규정에서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및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에게 자기차고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차량소유에 대비하여 주차장 건설만으로는 주차수요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차량소유자에게 1차적인 주차장 확보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기차고를 확보하는 구민에게 행정·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이 매 2년마다 주차장수급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특별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2년마다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 및 주차시설 현황조사를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태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2005. 7. 13 주차장법이 개정된 이후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안 제3조의 주차거부금지 규정 중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을 추가로 포함시킨 것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서 노

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부설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추가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3) 안 제3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전문개정**한 것은 위 3개항의 조문내용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4) 안 제6조제2항제1호의 타시·도 등록차량을 **삭제**하고, 제4호에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하여 주차하는 자동차 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위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사전징수대상 중 제1호의 타시·도 등록차량을 **삭제**한 것은 전국번호의 시행으로 번호판만으로는 타시·도 등록차량임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현재 주차장 운영 시 타시·도 등록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사전징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미납주차요금의 경우 운행제한장치 설치 및 해당차량의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가 가능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 제4호를 **신설**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의 경우 현재 주차기간 시행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관련근거가 없어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5) 안 제13조의 주차시간 단위를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간 단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전문개정**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 주차시간 최초단위를 30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잠시 동안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게 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10분으로 시행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6) 안 별표 1의 ※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으로서 노상주차장은 월 4만원으로 하고, 노외주차장은 월 5만원으로 한다. 로 차등화 하여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노상·노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4만원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비하여 환경이 열악하고, 차량파손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노상·노외 주차장의 요금을 차등화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2007. 3. 1 현재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개 자치구 중 중구를 비롯한 9개구가 차등화 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표 1>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2007. 3. 1 현재 (단위 : 원)

구 별	주차요금(노상/노외)	구 별	주차요금(노상/노외)
중 구	40,000/50,000	서대문	40,000/52,000
광 진	40,000/50,000	금 천	40,000/50,000
동대문	40,000/50,000	동 작	40,000/65,000
성 북	40,000/65,000	관 악	40,000/50,000
도 봉	40,000/50,000	-	-

○ 참고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주차요금수입은 총 34억 7,964만 3천원(거주자우선 주차장 수입

11억 4,120만원,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수입 23억 3,844만 3천원) 으로 편성되었고, 2006년도 결산 수납액은 **총 38억 8,248만 6천원**(거주자 우선 주차장수입 13억 4,211만 8천원, 공영주차장수입 25억 4,036만 8천원)이 되겠으며, 또한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차요금수입[시설관리공단수입(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총 34억 7,55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을 현행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차등화 하여 상향조정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은 **6,300천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총 거주자우선주차 면수 : **3,300면** (노외 22개소 : **639면**, 노상 180개소 : **2,661면**)
 총 공영주차장 17개소 : 노외 3개소, 노상 14개소

<표 2>

연도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요금수입 현황

2006 예산액		2006 수납액		2007 예산액	
• 주차요금 수입	3,479,643	• 주차요금 수입	3,882,486	• 주차요금 수입	3,475,560
-거주자우선 주차장	1,141,200	-거주자우선 주차장	1,342,118	-시설관리공단	3,475,560
-시설관리공단주차장	2,338,443	-시설관리공단주차장	2,540,368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영주차장)	

(7) 안 별표 1의 비고 제8호의 규정에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경형자동차에 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신설한 것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환경부 고시(제

2005-61호) 「저공해자동차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2006. 5. 4 개정 · 공포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부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IV. 관련법규

● 주차장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6호]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第8條 (路上駐車場の 管理) ①路上駐車場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을 設置한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理하거나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그 管理를 委託받은 者(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管理한다.<改正 1991.12.14,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の 資格 기타 路上駐車場の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と 그 管理를 직접 담당하는 者は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1983.12.31]

第10條의2 (路上駐車場管理者의 責任) ①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성실히 管理·運營하여야 한다.

②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毀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다만, 路上駐車場管理者가 常駐하지 아니하는 路上駐車場の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第17條 (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등) ①路外駐車場管理者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誠實히 管理·運營하여야 하며, 施設의 適正한 維持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の 供用期間에 正當한 事由없이 그 이용을 拒絶할 수 없다.

③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의 保管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毀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9條의3 (附設駐車場の 駐車料金徴収등) ①附設駐車場을 관리하는 者は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を 받을 수 있다.

②第1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の 管理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전문개정 1999.2.8]

●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현황을 대조·확인할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조사결과입력대장에 기재(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04.7.1]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90호], 시행일 2007.7.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서울특별시장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